

SUISUN CITY (서순 시티) 시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차단 정책

결의안 제2020-09호

본 ‘주택용 수도 공급에 대한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차단 정책’은 본 정책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시’의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적용된다. 본 정책과 ‘시’의 어느 조례, 정책 또는 규칙 간에 상충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한다.

제1조. 보증금

- (a) 30(삼십) 달러의 초기 수도 보증금이 모든 고객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그 보증금은 수도 서비스 신청 시에 납부되어야 한다.
- (b) 본 ‘결의’에 의거 납부되어야 하는 이전 수도 서비스에 대한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고객은 수도사업부와 신용거래를 재개하려면 계정당 초기 60(육십)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c) 수도 보증금은 서비스 중단 시 또는 고객이 2년 동안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 2년 후에 신청을 받고 고객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제2조. 요금고지서 발부

- (a) 요금고지서 발부 기간. 모든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고지서는 2개월마다 발부된다. 계량기는 주기적 요금고지서 발부를 준비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같은 간격을 두고 검침해야 한다. 요금고지서를 최초로 또는 마지막으로 발부하는 경우 특별 검침을 실시해야 한다.
- (b) 소급 요금고지서 발부. 요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던 수도를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수도사업부는, 계량기가 현존하지 않은 경우,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하거나 마지막 고객의 서비스 종지 날짜 및 검침 시부터 소급하여 요금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수도사업부는 초기 수도 사용량의 입증에 의거 이 소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c) 요금고지서의 최초 및 마지막 발부. 총 서비스 기간이 요금고지서 발부 기간 미만인 경우, 15(십오)일 단위 증분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 수도 소비량에 의거하여 요금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한다. 현행 요금제가 적용된다.
- (d) 납부. 요금고지서는 요금고지서 발부일에 요금이 납부되어야 하고 납부될 수 있다. 요금은 ‘시 행정 사무소’에 예치된 유효 자금으로 납부되거나, 또는 ‘시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납부되어야 한다. 수도사업부는,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고지서의 미수령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요금 납부금은 수도사업부가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만 입금된 것으로 간주된다.
- (e) 체납 계정. 모든 요금고지서는 요금고지서에 인쇄된 요금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 체납된다. 체납 요금과 해당 연체료가 그 계정이 체납되고 나서 60일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수도사업부는 부가 업무 취급 및 처리에 대해 추가 수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uisun City(서순 시티) 시와 Solano Irrigation District(솔라노 관개청)은 가구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이백 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2(십이)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 (f) 연체료. 제2(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요금고지서는 요금고지서에 인쇄된 요금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 체납된다. 체납되는 모든 요금고지서는 10%(십 퍼센트)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Suisun City(서순 시티) 시와 Solano Irrigation District(솔라노 관개청)은 가구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이백 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2(십이)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 (g)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대한 체납 통지서 및 요금의 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게는, 건전한 재정 기반 그리고 예산 승인과 지불명령서에 따른 지불 절차의 변동 때문에, 체납 통지서가 송부되지도 아니하고 기존 계정의 체납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지도 아니한다.
- (h) 연기된 납부 계획 협정. 정상적 납부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떤 고객도 최소한 두 번의 요금고지서 발부 주기 동안 당해 계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연기된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납부 기간은 십이(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안의 납부 일정을 요청할 자격을 얻으려면, 고객은:

1.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건물의 거주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복지 및 기관법) 제14088(A) (1)(b)항에 정의된, 일차 진료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고객은 자신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이백 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적 불능을 실증해야 한다. 고객은 자신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주 생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또는 고객이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이백 퍼센트(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연방 빈곤선의 이백 퍼센트(200%) 미만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다음 요금고지서 발부 기간까지 연장된 납부 일정은 연기된 납부 계획으로 간주되고, 이 계획은 서면으로 되어야 하고 고객이 서명해야 한다. 연기 납부 계획은 요금 고지서의 당초 날짜에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고객이 정한 기간에 걸쳐 미납 잔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분할 납부는 고객의 정기 요금 고지서와 병합되고, 그 고지서의 기일에 따른다. 고객은 분할 납부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요금이 각각의 차후 요금고지서 발부 기간에 누적되는 대로 경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은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체납 요금을 납부하는 동안 차후에 발생하는 미납 요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분할 납부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차단 통지서의 발부로 귀결된다. 차단 통지서는 서비스 중단 최소 5일 전에 건물에 전달되는 도어 행거의 형태로 작성된다.

- (i) 수금 절차 – 체납 계정. 체납 통지서는 그 계정이 체납되고 나서 30일 내에 1종 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체납 통지서에는 체납 납부금 전액을 수금 수수료의 부과 및 수도 서비스의 중지 전에 받아들이는 최종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최종 날짜에서 최소 15(십오)일 전에, 그 최종 날짜와 시간을 다시 명시한 차단 통지서가 1종 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 (j)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차단. 수도 서비스는 요금 미납이 되고 나서 60일 후에 중단될 수 있다. ‘시’는 계량기를 막고, 일부 경우에는 잠가 놓음으로써, 수도 서비스를 차단한다. 그 고객에게는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막혔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요금고지서 발부 시스템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 (k) 요금 청구. 받아야 하는 이러한 납부금이, 해당되는 바에 따라, 제 2(e) 항 또는 제 2(i) 항에 규정된 날짜 및 시간까지 수령되지 않는 경우, 수도사업부는 이십일 달러 삼십 센트(\$21.30)의 차단 수수료, 삼십오 달러 (\$35)의 당일 재연결 수수료, 및 최대 일백팔십 달러(\$180)까지 매번 차단에 대한 삼십 달러(\$30)의 추가 보증금을 포함하여, 모든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수 있다. 수도사업부는 해당되는 바에 따라, 제 2(e) 항 또는 제 2(i) 항에 규정된 납부를 집행하기 위해서도 수도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Suisun City(서순 시티) 시와 Solano Irrigation District(솔라노 관개청)은 제2(h)항에 규정된 공필 예외도 고려한다.
- (l) 차단 절차. 차단 날짜에, 수도사업부 담당자가 계량기를 달아야 하고, 봉인해야 하며 문에 통지서를 걸어 두어야 한다. 그 통지서는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고 수도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통보한다.
- (m) 부도난 납부금. 수령하였지만 그후 부도난 유통 증권은 유효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납부는 수도사업부가 부도 수표에 대한 \$29(이십구 달러)의 상환 수수료 및 온라인 납부 수수료 \$35(삼십오 달러)를 더한 모든 요금의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들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수 있다. 수도사업부는 고객에게 서비스 장소에서 문에 걸어 두거나 또는 1종 우편으로 송부되는 통지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 통지서는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 종지에 대해 추가 수금 수수료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를 통보한다. 반송된 수표와 반송된 수표 요금이 수도 서비스 종지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수도 서비스가 차단된다. 반송된 수표를 청산하기 위해 그리고 반송된 수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 (n) 체납된 한 곳의 서비스 장소. 고객이 한 곳보다 많은 서비스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 고객의 계정들 중 어느 한 곳에 대한 요금고지서가 체납되는 경우, 모든 다른 장소들의 서비스는 제2(e)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o) 수도 개통. 수도를 개통하는 경우, 모든 요청서는 당일에 개통하기 위해 정상 근무일 오후 2시까지 재정부에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당일에 개통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오후 2시 마감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개통을 성사시키기 위해 출장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수도 서비스의 차단 및 재연결에 대한 요금은 Solano Irrigation District(솔라노 관개청) 직원의 재연결 소요 시간을 그 직원의 시간당 비용으로 나눈 값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그 요금은 제반 기타 요금 및 보증금에 추가되는 것이다. 연방 빈곤선의 이백 퍼센트(200%) 미만의 가구 소득을 실증하는 고객은 최대 \$50(오십 달러)의 통상 업무 시간 중 재연결 수수료, 최대 \$150(일백오십 달러)의 업무 시간 후 재연결 수수료, 또는 더 적은 경우 실제 재연결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재연결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대해 매년 조정될 수 있다. Suisun City(서순 시티) 시와 Solano Irrigation District(솔라노 관개청)은 가구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이백 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2(십이)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 (p) 무단 “개통”. 서비스가 본 결의안의 어느 조항이든 그 조항의 미준수로 인해 중단되고 서비스가 허가 없이 재개되는 경우, 계량기는 수도 감독관이 정하는 수단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35(삼십오 달러) 요금이 서비스 복구에 대해 부과된다. 그 요금은 제반 기타 요금 및 보증금에 추가되는 것이다.
- (q) 손상 장비. 수도 배수 장비가 서비스의 무단 재개 중에 손상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수도 감독관은 손상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요금은 최소 35(삼십오 달러)이어야 한다. 이 요금은 제반 기타 요금 및 보증금에 추가되는 것이고 손상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새 계량기

계량기 요금은 설치 서비스 요금에 추가되는 것이고 모든 수도관을 주택 소유자가 설치한 경우 세분업자 및 청부업자의 편의를 위한 별도 요금으로 간주된다. 수도사업부는 수도 계량기 설치에 대해 아래 요금을 징수해야 하고 그 요금을 매년 인상할 수도 있다.

<u>계량기 크기</u>	<u>요금</u>
3/4"	\$ 368.00
1"	\$ 407.00
1 1/2"	\$ 896.00
2"	\$1080.00

더 큰 크기는 원가 가산 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고객이 수도사업부에 계량기 함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 계량기 요금은 원가 가산 방식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제4조. 잡다한 그리고 부수적인 서비스 요금

수도가 임시 및 부수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요금이 적용된다.

- (1) 계량기 설치 전, 단독 주택 건설, \$15.00 (일회 요금). 수수료는 ‘시 의회’가 채택한 기본 수수료 일람표에 따른다.
- (2) 계량기 설치 전, 다가구 주택 건설, 첫 번째 동에 대해 \$15.00 그리고 각 추가 동에 대해 \$7.50 가산 (일회 요금). 수수료는 ‘시 의회’가 채택한 기본 수수료 일람표에 따른다.
- (3) 계량기 설치 전, 제반 기타 건설, \$15에 수도사업부와 청부업자 간에 협상가능한 추가 요금 가산. 수수료는 ‘시 의회’가 채택한 기본 수수료 일람표에 따른다.
- (4) 소화전으로 인해 대량의 수도물이 필요한 경우, \$750의 보증금이 소화전 계량기에 대해 청구된다. 수도 사용량은 현행 요금제에 따라 요금고지서가 발부된다. 소화전 계량기가 납품되었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되고, 모든 요금이 납부된 경우, 소화전 계량기에 대한 보증금은 환불된다.
- (5) 소화전에서 트럭에 담은 수도물은 현행 요금제에 따라 요금고지서가 발부된다. ‘시’ 직원 또는 ‘시’ 장비가 연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이 시간 및/또는 자재 원가에 10% 간접비 가산 방식으로 청구된다.

제5조. 이의 제기

본 규정의 행정적 적용에 의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도 고객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연속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 재정 국장/행정 서비스 국장

2. ‘시’ 관리자
3. 시 의원들로 구성된 2인 위원회, 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시 의회에게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되고 효력을 유지하는 당초 결의안

본 결의안은 당초 결의안 제87-2호를 그 결의안이 상원 법안 제998호, 캘리포니아 수도 차단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본 결의안이나 다른 결의안에 의해 구체적으로 수정된 정도까지 보충하고 수정하며, 당초 결의안 제87-2호는 계속 완전히 시행되어야 하고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 즉시 발효함

본 결의안은 통과 및 채택 즉시 발효되어야 한다.

제8조. 분리가능성 및 효력

본 결의안의 어느 조항, 하위 조항, 절 또는 문장, 또는 그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헌법에 위배되거나, 무효이거나 또는 SUISUN CITY (서순 시티) 시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해 결정은 본 결의안의 남은 부분들의 효력이나 효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